

## 사이버무역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와 활성화방안

이신규\*

### 요 약

국제무역부문에서 사이버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물품운송 및 무역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무역보다 전자환경에 맞는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축이 필요하다. WTO, OECD, UNCITRAL, APEC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무역 관련 국제규범에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자계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전자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및 권리구제에 대한 전자적 합의의 표준화, 전자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서류의 권리이전문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사이버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방송·통신·컴퓨터의 발달로 사이버무역(cyber trade)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한 무역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은 기존의 폐쇄형 네트워크 환경을 개방적인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화하게 만들었으며,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해져 VAN EDI에서 Internet EDI 또는 Web EDI시대의 전환을 예고하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국제무역거래는 본격적인 사이버무역시대의 도래를 초래하였다. 국제무역거래가 인터넷을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청약과 승낙, 무역계약의 체결, 웹을 이용한 전자신용장의 개설, 웹사이트를 통한 운송계

약과 운송서류 발행, 웹을 이용한 보험계약과 보험서류 발행, 웹을 이용한 통관업무 수행, 웹사이트에서의 매입행위 등의 업무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무역거래의 발전과 팽창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 사이버무역거래의 확대는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무역거래는 과거의 대면거래나 전화에 의한 격지자간의 거래와는 달리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문제점이 예상된다.

전통적인 종이문서의 개념, 계약의 개념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전자서명, 인증기관, 계약법,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 등의 법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에서부터 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 청운대학교 국제무역정보학과 조교수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이버무역의 관심과 성장가능성에 비하여 국제무역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의 구축이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에서의 사이버무역거래 수행에 장애가 되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전자계약, 전자서류, 전자결제 분야로 한정시켜 검토하고 전자거래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e-비즈니스 관련 논의동향

### 2.1 WTO

WTO에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논의는 1998년 2월 WTO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이 전자상거래 무관세화를 위한 국제규범화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WTO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논의는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및 지적재산권이사회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시 상품무역이사회와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전자적 전송물의 유형화 문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연장 및 영구화문제, 통신부속서상의 의무가 인터넷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의 여부, WIPO에 채택된 인터넷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그리고 창작성이 없더라도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된 자료의 보호 등을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대한 사항이었다.

전자적 전송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의 상품분류방식인 물품의 외형(tangible or

intangible)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전자적 전송물을 서비스로 간주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었다. 또한 전자적 전송물의 형태가 정보의 대량공급인지에 따라 이를 상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분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는 제3의 유형, 즉 혼성물(hybrid product)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혼성물이란 컴퓨터로 운영되는 기계와 같은 것으로 기계는 수입되고 기계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받을 경우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없는 기계는 단지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여 기계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렵고 다운받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곤란하다. 결국 이를 상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어느 하나로 취급하거나 컴퓨터부분과 기계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취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3의 혼성물로 취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연장 및 영구화 문제는 그것이 전자상거래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신부속서상의 의무가 인터넷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이버무역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서비스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그 동안 WTO 상하 위원회별로 논의된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쟁점사항들이 제3차 WTO각료회의에 제출되었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조치를 차기 각

료회의 때까지 연장하되 향후 영구 무관세화에 대해 논의한다는 원칙과 WTO전자상거래의 논의를 지속함에 있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하지 않고 각 이사회별로 논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2.2.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1987년 전자자금 이체에 관한 법률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1992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모델법을 제정한 바 있다. 동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을 구성하여 국제적 전자상거래 계약을 규율할 모델법 논의를 진행하였고 타결된 결과를 1996년 5월 본 회의에서 정식 채택하였다.<sup>1)</sup>

전자상거래 모델법만으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다루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하에 동 위원회는 1997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칙 초안(Draft Uniform Rules on Electronic Signature)'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최근 2000년 9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UN본부에서 열린 제37차 작업반 회의에서 통일규칙 초안의 상당부분이 타결되었다.

제37차 작업반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2조 외국 인정서,

전자서명의 인정 및 통일규칙의 법적 지위 등이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의 개념은 기술중립의 원칙, 그리고 법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반영되었고, 인증서(certificate)의 개념도 일반성 및 기술중립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서명자와 서명생성 데이터간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데이터 메시지 기타 기록으로 단순하게 정의되었다.<sup>2)</sup> 제12조 외국 인증서 및 전자서명의 인정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항 인증서 또는 전자서명 발급장소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에 전자서명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둘째, 상호인정은 국가의 공표된 결정 또는 이해 당사국간이나 당사국들간의 양자 또는 다자협정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초안내용에 대해 통일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에 따라 인증서의 신뢰성 정도에 대해서만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로 존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외국 인정서 및 전자서명의 동등성 요건으로 "인증서 또는 전자서명이 사실상 동등한 수준인지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 승인된 국제표준 및 기타 다른 신뢰요소를 가졌는지 고려한다"는 제4항의 내용에 대해 제10조의 인증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므로 삭제하거나 입법지침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명시적 필요성으로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하였다.

통일규칙의 법적 지위문제에 대해 UNCITRAL

1) 모두 2부 17개조로 구성된 동 법의 특징으로 첫째, 모델법의 형식을 취하여 각국이 국내 입법을 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적용범위를 국제거래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내거래에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셋째, 상거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소비자거래와 경매, 통관절차와 같은 공공부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인증서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작업반 회의의 의장은 "Certificate means a statement establishing a link between a person or entity and a signature device which allows confirmation of certain facts relating to electronic signature"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이 인증서가 과연 statement인지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개념내용에서 삭제되었다.

전자서명법이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를 협약(convention)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델법(model law)으로 할 것인지가 논의의 주된 내용이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지위를 모델법으로 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제37차 작업반 회의의 의미는 전자서명통일규칙 제정일정이 가시화된 점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있다.<sup>3)</sup>

### 2.3. OECD

OECD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다. 1980년 '사생활보호 및 개인신상에 대한 데이터의 국가간 전송에 관한 지침', 1985년 4월 '국가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선언문', 1992년 11월 '정보시스템 보안지침', 1999년 12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등을 채택하였다. OECD는 주로 전자상거래를 범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국제적인 원칙의 수립과 전자상거래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마련 등을 다루고 있다. OECD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크게 정보통신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기술적 인프라 등 세 가지로 그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 인프라는 다시 유선통신망, CATV망, TV,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 인터넷 기반시설, 둘째, 사회적 인프라는 다시 개인정보보호, 시장접근, 정보이용 가격, 조세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공정책, 법률 및 제도, 그리고 셋째, 기술적 인프라는 네트워크의 기술적 표준과 보안, 인증, 대금결제 등

3) 통일규칙초안과 관련하여 우리가 정책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될 외국 인증기관 인증서의 국내법상 효력(상호인정), 디지털 서명 이외의 다른 전자서명 방법의 인정여부, 인증기관의 책임제한 여부,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상호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을 그 논의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1998년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의 결정4)에 따라 동 회의 결과인 각료선언 및 실행계획의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논의를 위한 실무급 후속회의가 1999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정부, 민간기업, 국제기구, 소비자단체 및 노동자단체 등이 참석한 파리포럼은 '전자상거래 기회의 극대화'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오타와 각료회의 후 진전사항 점검 및 차기 정책이슈 모색이 목표였다. 오타와 각료회의의 4대 주제인 '소비자와 사용자의 신뢰구축',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통신 기반의 확충', '디지털시장의 기본규칙 정립', 그리고 '잠재가치의 극대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현황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 2.4. APEC

전자상거래를 전체 APEC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7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한 이후이다. APEC에서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작업그룹은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 TEL)그룹과 전자상거래 추진작업반(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이다.

1997년 11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정상회담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역내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전기통신그룹에 지시하였다. 1998년 2월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호주의 제안에 따라 전자상거

4)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경없는 세계 :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가능성 실현(A Borderless World : Realiz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이라는 주제로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래 작업반(Task Force)이 구성된 후 199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 각료선언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행조치 준거틀(A Reference Framework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이 채택되었고, 1998년 9월 일반이사회 특별회의 개최시까지 전자상거래에 관한 무역관련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1998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에서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APEC 전자상거래 실행을 위한 청사진(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였다. 1999년 6월 뉴질랜드회의에서 결성된 전자상거래 작업반은 그 후속조치 및 본격적인 시행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APEC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전자상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방안, 통신인프라 관련 사안, 조세, 관세 등 정부규제 관련 사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및 그 역할분담, 전자지급제도, 배달제도 등 물류 관련 사안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 측정방법(Measurement of Electronic Commerce), 무역자동화(Paperless Trading),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전자상거래와 법, 조기경보(Readiness Indicators),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기구 논의동향 등도 전자상거래 추진작업반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III. 사이버무역거래와 관련된 법적 문제

#### 3.1. 전자계약

##### 1) 전자문서에 관한 법적 문제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되거나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는 컴퓨터와 같은 기계장치가 없다면 외견상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며, 데이터의 수정이나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대한 문서성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sup>5)</sup>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문제에 관련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문서의 문서성이다. 전자문서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서류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전달기능(informative function), 입증기능(evidential function),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입증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약정을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상에 명문화하는 방법과 표준화계획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포함시켜 명문화하는 방법, 그리고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을 바꾸고 보호조치 강구의무를 통신망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도 적절한 안전조치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5)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는 "500달러 이상의 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문서적 증거가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법에서도 "10파운드 이상의 매매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전자문서의 입증성이다. 전자문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통적 서류와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문서나 기록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전자문서가 중요한 법적 증거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전자문서에도 종이서류에 대해 인정해오던 것과 같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전통적인 서류의 경우 자료는 서명에 의하여 진본임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내용의 증빙이 간단하지만 전자문서의 경우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든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결국 전통적 서류를 전자문서지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적, 실무적 차원에서 표준화 및 자동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에 대해 전통적 서류가 갖는 법률적 인정성의 부여와 법적 자료로써 이를 채택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의 사용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6)</sup>

## 2) 전자서명에 관한 법적 문제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이란 '전자적 환경에서 인증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전자서명은 서명자가 서면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지 않고 전자적 조작에 의하여 얻어진 일정한 형태라는 점에서 종래 행하여지던 자필서명과 구별되지만, 당사자를 확인하거나 서명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자필서명이 가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자서명의 실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구결과로 각국에서 이에 관한 입법시 제시되었거나 반영된 것이 비대칭형 암호<sup>7)</sup>의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된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이다. 전자서명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실제 전자서명을 넓은 의미로 새기고, 디지털 서명을 전자서명의 대표적인 형태로 인식하여 정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현행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자서명법 등에 실제적으로 디지털서명을 수용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경우 서류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키 기법에 의한 디지털 서명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전자서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첫째, 진정성(authenticity)으로 그 문서가 누구로부터 전송되었으며 진정한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개방형 네트워크(정보통신망)를 이용한 거래는 종래의 전통적인 거래방법 또는 폐쇄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와 비교할 때 상대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기존 거래에서 사용하던 신원확인 수단인 기명날인이나 수기서명 등의 방법은 가상 공간상 거래에서 거래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거래 당사자들이 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3자가 거래당사자 본 것처럼 나타낼 목적으로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진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행위를 저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막으려면 직

6) UNCITRAL LAW에 의하면 데이터 문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데이터 문서 형태의 자료는 충분한 증빙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어떠한 증거법 원칙도 ① 그것이 데이터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②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그것을 입수하여 제출할 수 있는 최상의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원본의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로서의 데이터문서의 효용성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3항), 우리 나라 전자거래기본법도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7) 1970년대 중반에 Ralph Merkle, Whitfield Diffie 및 Martin Hellman에 의하여 공개키 알고리즘이 개발되었고, 1978년에 Ron Rivest, Adi Shamir 및 Leonard Adleman에 의하여 비대칭형 암호방법(asymmetric cryptography)을 통한 디지털서명이 개발되었다. 후자를 흔히 RSA알고리즘이라 부른다. 비대칭형이란 두 개의 서로 다른 키를 가지고 하나의 키로써 암호화하고, 다른 하나로 복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암호기법을 의미한다.

접적으로 상대방을 확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디지털 서명이다.

둘째, 전자문서의 무결성(integrity)이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보낸 내용은 제3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고 원래의 내용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송되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방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문서 등의 전자정보를 송·수신할 때 그 내용의 진위를 판가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자적 거래는 신속성, 효율성 및 경제성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당사자 확인문제 외에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서명은 송·수신하는 전자문서가 서명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문서가 작성된 것이며, 유통·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sup>8)</sup>

셋째, 거래내용의 부인 방지(non-repudiation)이다. 당사자 사이에 전자문서를 서로 교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전자문서를 통하여 체결된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 디지털 서명과 인증제도는 당사자간 거래를 위하여 표시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 내용이 인증기관에 남기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다툼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넷째, 개인정보의 보호이다. 개방형 정보통신망의 주된 문제는 정보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인터넷 등 개방형 정보통신망은 누구나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본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자의 정보내용이 완전히 노출된다는 약점이 있다. 전자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용자 개인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일 뿐만 아니라 전자적 거래의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내용이다. 디지털 서명은 비대칭형 암호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개인정보의 공개를 막아 보안의 취약점에서 야기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 3) 사이버무역계약체결에 관한 법적 문제

상관습과 법제가 상이한 국가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단순히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의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상당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이다. 전자상거래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 계약의 성립 및 계약의 이행이 모두 컴퓨터통신망이나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다.<sup>9)</sup> 전자적 의사표시란 사람의 의사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와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직접 표시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표시되어지는 의사표시<sup>10)</sup>로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의사표시가 기존의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한 법적 효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자연적 의사표시와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은 기존의 자연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의 법률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적 의사표시를 기존의 법률사실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자연적 의사표시와 완전히 동일한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종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전자문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The document hasn't been changed)"는 것이다.

9) 윤광운 외 2인,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1999, p.189.

10)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6, p.105.

둘째, 사이버무역거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무역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계약성립을 위한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내용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일치하는 바에 따라 청약(offer)와 승낙(acceptance)에 의해 이루어진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 청약에 대한 승낙은 문서에 의해 할 필요도 없고 증언(by means of witness)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다. 하지만 승낙의 방법에 대해 청약자가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전자적 의사표시가 기존의 전통적 종이서류를 대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 상점을 개설하는 것을 구속력 있는 청약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선택한 상품의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승낙으로 보고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이다.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되지만, 청약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로부터 발송되어 청약자에게 도달될 때까지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승낙의 의사표시에서 대화자간이나 격지자간에는 도달주의 또는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있다. 비엔나협약인 UNCITRAL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를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 거래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되

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의사표시의 발생시기에 대해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sup>11)</sup>,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에 대해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sup>12)</sup> 한편 대화자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이버무역 계약의 성립시기를 발신주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달주의로 할 것인지는 격지자간의 계약인가 아니면 대화자간의 계약인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사이버무역거래에 의한 계약이 격지자간의 거래인지, 대화자간의 거래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전자매체에 의한 송·수신시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메일서버에 전송된 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측면에서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고, 전자통신기술의 발달과 사이버무역거래계약이 보편화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과 승낙의 전자적 의사표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무역거래에서 매매당사자가 국가나 지역마다 도달주의 혹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사이버무역거래에서는 발신주의와 도달주의의 용어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청약을 할 경우에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사이버무역거래계약에 대한 증거법이다. 전통적 거래에 있어서 거래와 귀속되는 공간은 어느 정도 특정지을 수 있지만 사이버무역거래의 경우 공간적 특징이 어렵기 때문에 영토권적 개념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전통적 증거법의 결

11) 민법 제11조 1항

12) 민법 제531조



정 및 적용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상공간을 새로운 법적 영역으로 인정하여 규범을 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sup>13)</sup> 따라서 인증기관이나 결제매개기관, 통신사업자 등과 복잡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가상공간에서의 국제적인 준거법 제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

### 3.2. 운송서류

사이버무역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종이서류들이 전자메시지로 대체되면서 전자계약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가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유통성 운송서류는 그 동안 선하증권의 지연도착문제와 이에 따른 추가경비 소요, 선하증권 발급에 따른 부대경비의 과다소비, 종이서류로서의 선하증권의 위조에 따른 사기문제 등이 제안되어 왔다.

#### 1) 권리의전의 전자화에 대한 안정성

전통적인 선적해상선하증권(on board marine bill of lading)은 CFR조건이나 CIF조건하에서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유일한 서류로 본선에 물품을 인도한 증거, 운송계약의 증거, 타인에게

동 서류를 이전함으로써 운송중인 물품에 대한 권리를 이전시키는 수단 등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다. 선하증권 이외의 운송서류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서류를 구매자에게 양도하여 운송중인 물품을 전매할 수 없다.

전자선하증권으로 대체될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유통이 가능한 운송서류로서의 전자식 선하증권이 전통적인 종이선하증권과 같이 물품의 물권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선하증권의 전자화로 인하여 선하증권이 가지는 상징적인 기능인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혹은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으로서의 법적인 성격, 즉 은행거래에 있어서 담보기능과 서류의 이전에 의한 물품의 전매기능을 데이터의 전자적 이체(electronic transfer)에 의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제해사위원회(Commite Maritime International : CMI)에서는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칙의 고안을 위해서 선하증권의 움직임을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나누어서 그 요소들 중의 어느 것이 유통성에 필요한가를 결정한 후 필요한 요소들과 기능적으로 등가관계에 있는 것들을 전자선하증권을 만드는데 사용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소지자에게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종이선하증권의 특징적인 기능을 모방하였다. CMI는 송화인-운송인-수화인간의 관계에서 선하증권의 제일 중요한 상거래 기능을 다루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CMI규칙에서는 종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그것과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자서류를 개인등록기관(private registry)인 해상운송인이 송화인의 전자주소에 전송하고 최종 양수인에 이르는 일련의 '권리의 전자적 이전'이 행해진다.

13) 전자상거래의 경우 적용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되고, 당사자들간에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지의 법외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나라 법외사법 제9조 단서에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도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접근계약과 복제물의 전자적 송신을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 체결된 때의 라이선스 소재지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8편 제107조 (b)항), 이 항에 의하여 "미국 이외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역에 소재하지 않는 당사자의 권리에 대하여 통일상법전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를 하는 경우에만 그 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률 가진 국가의 법이 된다(28편 제107조 (c)항)"고 규정하고 있다.

UNCITRAL에서는 종이선하증권의 목적 및 기능들이 데이터 메시지 기법을 통하여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준비하는데 분석도구로서 '기능적 동가물(functional-equivalent)'<sup>14)</sup>이라는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전통적인 선하증권에 존재하는 동일유형의 특유한 성격을 '추상화된(de-materialized)' 형태로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CMI규칙이 완성된 후 BIMCO는 CMI규칙에 기반을 둔 전자선하증권제도의 개발계획에 착수하였으나, 막대한 투자비의 기금마련에 실패하였으며 TT클럽과 SWIFT가 합작으로 투자하여 블레로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전자선하증권의 최종판이라고 생각되는 블레로 선하증권(Bolero Bill of Lading : BBL)이 탄생하게 되었다.<sup>15)</sup> 블레로 선하증권은 전자적인 두 요소인 블레로 선하증권 문서(BBL Text)<sup>16)</sup>와 권리등록기록(Title Registry Record)<sup>17)</sup>으로 이루어져 있다. 블레로 시스템에서는 전자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선하증권과 같이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블레로 선하증권문서를 작성하고, 권리등록기록은 블레로 선하증권상의 거래를 실행한다. 사용자들이 권리등록기록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변경함으로써 블레로 선하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 운송계약의 이전에는 물품에 대한 위탁자인 송화인의 이익인 추정적 점유권의 이전에 의한 방법과 갱신(novation)<sup>18)</sup>에

의한 방법이 있다. 블레로 시스템에서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임명된 국제블레로회사가 운송인을 대리하여 새로운 양수인과 운송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이전된다.

## 2) 신용장방식의 거래시 전자운송서류의 수용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신용장방식으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장통일규칙(UCP)에서 전자식 운송서류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UCP의 규정이 전자무역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무역거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UCP의 서류라는 표현에 EDI 메시지와 같은 전자적인 방법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sup>19)</sup> 하지만 UCP의 동 조항에서 EDI메시지가 서류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서류의 생성문제에 있어 종이서류를 발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 UCP의 제13조에서 규정된 '문면상으로(on their face)'란 서류의 외형에 대한 언급으로 EDI메시지에 적용될 수 없다. 결국 화환신용장의 전자화는 주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단지 부분적으로 UCP의 기존체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3. 전자결제

전통적인 무역대금결제의 방법으로는 신용장

14) 기능적 동가물이란 종이선하증권의 목적 및 기능들이 '전자메시지(data message)'기법을 통하여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준비하는 UNCITRAL 작업부가 분석도구로서 채택한 것이다.

15) 블레로는 유럽을 위한 선하증권(Bill of Lading for Europe)의 약자로 유럽에서 선하증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선하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16) BBL문서는 블레로 선하증권의 서류요소로서 핵심 메시지 플랫폼(core messaging platform)에 전송되어 권리등록에 기록된다.

17) 권리등록기록은 권리등록에 보관되어 있는 구조화된 정보로서 BBL 원문에 연결되어 있고 관련된 블레로 선하증권을 포함하고 있는 권리등록지시에서 나온다.

18) 갱신이란 새로운 계약으로의 대체로서 새로운 계약이 당사자만 바꾸어서 원래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19) UCP 제20조 b항에서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서류로써 원본이라는 표기가 있고 필요한 경우 서명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원본으로 수리한다. i) 복사시스템, 자동화 또는 전산화된 시스템, ii) 카본 복사지 서류는 육필, 팩시밀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상징 또는 타 기계적 혹은 전자적 진정성 방법으로 서명될 수 있다.

에 의한 방식, 전신송금환(T/T)·우편송금환(M/T)·송금수표(D/D)와 같은 송금(Remittance)방식, 그리고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D/A)·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D/P)과 같은 추심방식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무역거래가 증가하면서 지급결제수단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전자결제란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결제하는 것으로 진정성(authenticity), 무결성(integrity), 부인방지(non-repudiation), 기밀성(confidentiality)에 대한 전자문서의 활용과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이전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지급수단 및 결제의 전자화로 인하여 지급과 결제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을 통합하는 의미로 '결제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제시스템의 유형으로는 신용카드(credit card), 직불카드(debit card), 전자화폐(electronic cash),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방식, 무역카드(trade card) 및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전송신용장(SWIFT L/C)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이버무역거래에서 적용되는 전자결제는 주로 국내거래를 중심으로 신용카드나 계좌간 이체방식이었고 'B-to-C'의 대표적 기업인 Amazon.com 등이 신용카드에 의한 소액 전자결제를 국제결제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간의 대규모 거래에서 전자식 결제방식인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의 기반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1) 전자식 신용장

전자식 신용장의 개념을 신용장 개설에서부터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전자화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현재 전자식 신용장의 시대라고 할 수 없다. 신용장의 발행, 통지, 확인 또는 매입에 대한 은행의 요청에

서 75%는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서신에 의해 송부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종전의 전신(cable)·전보(telegram)·가입전신(telex)을 전송(teletransmission)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대부분의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의 발행과 통지가 전신이 아닌 스위프트(SWIFT)를 이용하고 있다.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전송방식의 신용장은 은행간의 통신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의 발행과 통지는 은행간에 SWIFT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용장발행은행과 신용장발행의뢰인 또는 통지은행과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과 수익자간의 신용장거래는 전송신용장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전자식 신용장은 동 신용장의 이용을 지배하는 시스템과 절차가 최종적으로 적절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시험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 2) 무역카드(TradeCard)

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 비율이 높고 신용장의 개설과 매입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많아 신용장거래의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 전 세계 50만여개의 무역회사를 회원사로 하는 세계 최대의 비영리 민간경제단체인 세계무역센터협회(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WTCA)가 중심이 되어 무역서류의 전송과 대금결제방법을 전자화하기 위한 무역카드 시스템이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sup>20)</sup> 무역카드는 무역거래에 필요한 서류의 자동화시스템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지를 이미 실험하였고 1999년 5월 한국과 홍콩이 WTCA총회에서 시범이행국가로 선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무역카드시스템은 비

20) 박석재, "사이버 무역시대의 신결제방식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8. p.246.

용이 드는 서류작업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건당 미화 150달러의 수수료와 미화 250달러의 연회비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sup>21)</sup>

하지만 무역카드에 의한 결제는 제시되는 전자문서인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담보권 확보와 유통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거래거래에 따른 결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3) 전자자금이체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는 전통적인 환어음 등의 금융서류와 운송서류 등의 상업서류에 대한 추심이체방식과는 달리 원지급지시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송금은행과 중개인을 통하여 지급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전자적으로 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자금이체방식은 미국과 같이 기반구축이 되어 있는 특정국가에서 국내의 전자자금이체에 활용되고 있으나 B-to-B간 무역거래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의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21) 무역카드시스템에 의한 거래이행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매수인은 신용공여기관(funder)으로부터 신용평가 후 신용공여한도를 설정받는다. ② 매수인은 매입주문서(purchase order) 및 물품운송 관련 명세를 작성한다. ③ 매매당사자는 계약조건을 협상한다. ④ 매도인은 매입주문서의 거래조건을 전자적으로 승인한다. ⑤ 무역카드는 대금지급보증서(assurance of payment)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 ⑥ 계약조건에 따라 적화보험(cargo insurance)을 확보한다. ⑦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인도의 증거서류를 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하고 검사보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계약시 요구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⑧ 일치성을 검토한다. ⑨ 전자문서의 불일치가 있으면 이에 대한 협상 및 승인을 하고 당초 전자계약서의 매입주문서를 수정한다. 그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당사자에게 무역카드시스템에 의하여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대금지급통지를 한다.

## IV. 사이버무역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4.1.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규범의 정립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문제로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같이 문서적인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자서류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NCITRAL 모델법 및 우리의 전자상거래법 등과 같은 여러 법률이 전자문서가 기존의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증성에 대해 법원에서 입증자료로서 채택하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서명과 관련한 인증기관의 문제에서 인증기관은 신뢰성이 있는 시스템의 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에서 취소에 이르기까지 범규에 따라 이행을 이행해야 한다. 전자적 의사표시는 자연적 의사표시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법리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준거법 채택에 있어서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비엔나협약 등의 국제무역관련 법규들은 유형채를 중심으로 법제화되어 있어 무형채인 전자형 정보채의 경우에는 거래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비엔나협약과 같은 제2의 국제전자상거래에 관한 통일규범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2.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첫째,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요구된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이나 CMI에서의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CMI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선하증권의 전자적 이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식 운송서류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고 전자적 운송서류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가 마련되고 이 법규가 국제법규나 관습법은 물론 각국의 국내법에서도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식 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등 기본적 내용을 규율하는 EDI 기본법형식의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고 운송인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약관을 심사하고 계약법의 해석원칙과 해상운송계약과 선하증권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통가능 전자적 운송서류에 관한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 거래상의 중립성과 자료접근의 용이성, 신뢰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전자선하증권을 운용하기 위하여 공적기관 형태의 중앙등록기관을 설정하거나 기타 유사한 등록기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용장통일규칙에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을 삽입시켜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를 유도시킬 필요가 있다.

## 4.3. 글로벌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전자자금이체 등과 같은 전자결제의 수단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금융기관간에는 이용될 수 있으나 상관습이 상이한 국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은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간 전자자금이체 방식, 무역카드와 같이 국제거래에 적합한 국제결제시스템의 구축마련이 요청된다. 전자식 신용장은 신용장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EDI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EDI환경이 열악한 국가들에서의 사용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전자적 메시지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필요한 종이서류로의 전환을 허용할 경우 점진적으로 이 신용장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이 매입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와 유통성문제를 해결시킴으로써 현재의 스위프트(SWIFT)시스템을 보완하여 전자신용장에 따라 서류는 전자문서를 제시하고 대금은 전자이체방식으로 결제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인터넷 등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무역거래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 무역기업간의 사이버무역거래를 위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무역단계별 정보화 단계는 부문별로 제도화되어 있고 성숙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반면 대부분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많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WTO, UNCITRAL, APEC,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문서의 원본은 사본과 구별할 수 없고, 수기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서면상으로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추적당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처리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기(fraud)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종이서류의 법적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되어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의 대부분이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하증권은 무역거래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화물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도착함으로써 물품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점, 선취화물보증서(L/G)에 의한 보증인도 등과 같은 불필요한 비용 등으로 인한 선하증권의 위기문제가 대두된 점, 종이선하증권의 발행과 절차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권리증권으로서의 선하증권을 둘러싼 사기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운송서류의 전자화가 불요불급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CMI, UNCITRAL 등을 중심으로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정비가 요청된다. 또한 유통가능 전자식 운송서류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신용장통일규칙 등과 같은 무역관련 국제규칙에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계약 체결과 전자운송계약 체결 등 일련의 절차들이 전자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자무역거래가 활성화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증권에 화체권 권리를 이전시키는 기능의 전자화가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원본성, 보안 및 메시지의 준거능력을 시스템에서 확보되도록 하여 선하증권의 권리이전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국제무역부문에서의 전자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물품인도, 대금결제 등에서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나은 결제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SWIFT시스템에 의한 전송신용장은 아직 완전한 결제시스템은 아니지만 약간의 기능과 제도를 보완한다면 국제 전자결제시스템으로의 이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자자금이체 등과 같은 전자결제수단은 아직 특정지역의 특정국가들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이용을 위한 시스템마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시스템개발의 제도적 문제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국제무역에 관련된 기구와 협의하여 전자문서와 대금결제가 연계되는 시스템과 규범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선광,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창립 학술발표대회, 1998. 12.
- 박명섭·조중주, “전자식 선하증권의 양도성 기능의 부여를 위한 시도와 문제점”, 한국무역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0. 4.
- 박석재, “사이버무역시대의 신결제방식에 관한

-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8.
- 배대현, “전자서명과 인증”, 인터넷법률, 창간호, 법무부, 2000. 7.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2000
- 송계의, “전자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 12.
- 안병수, “국제전자상거래시대를 대비한 Bolero Project와 TradeCard System”,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2.
-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 창간호, 법무부, 2000. 7.
- 윤광운 외 2인,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1999.
- 윤광운, “전자상거래의 이용에 따른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 5.
- 이장기, “전자선하증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6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1. 5.
-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6.
- 최석범, “글로벌 전자무역시대에서의 블레로 선하증권의 기능과 문제점”, 무역상무연구, 제1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8.
- 한국은행,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수단 현황”, 지급결제정보, 제2000-2호, 2000: Bank of Korea, <http://www.bok.or.kr>
- 한성일, “인터넷 전자상거래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8.
- 한승철,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제스티스, 제31권 제1호, 한국법학원, 1983. 3.
- Anonymous, “New EDI-enabled may streamline international trade”, *Automatic I.D. News*, Vol.15, Iss.3, March 1999.
- Anonymous, “UNICTRAL-Electronic Commerce : Towards Replacing the Paper Based Letter of Credit-A Conceptual Model”, *Letter of Credit Update*, Vol.13, No.3, March 1999.
- Anonymous, “Internet LCS Has Been Launched”, BANK SYSTEMS TECHNOLOGY, February 1997.
- Boss Amelia H. and Winn Jane Kaufman, “The Emerging Law of Electronic Commerce”, *Business Lawyer*, No.52, August, 1997.
- Brook, E., “Traders meet the web”, *Interweek*, Iss. 796, January 17, 2000.
- Chandler George F., “Maritime Electronic Commer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ulane Maritime Law Journal*, Vol22, Summer, 1998.
- 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 1990.
-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1990.
- Cottrill, K., “TradeCard’s here”, *Traffic World*, Vol.262, Iss2, April 10, 2000.
- ePayment Resource Center, <http://www.epay-news.com>
- Godier, K., “Electronic Trading : new systems emerge”,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6, No.2, Spring 2000.
- Fox William F.,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merican Law Institute*, SE06 ALI-ABA, 1999.
- ICC, INCOTERMS, 2000.
- The Bolero Project, The Bolero Service-

Business Requirements Specification  
Version 1.0, 12 September, 1997.

Winn Jane Kaufman, "Clash of the Titans  
:Regulating the Competition between and  
Emerging Electronic Payment Systems",  
*Berkely Technology Law Journal*, Vol.14,  
Spring, 1999.

<http://my.netian.com/~profish/ec/digsig.htm>

<http://my.netian.com/~profish/wyc/ec-law.htm>

<http://my.netian.com/~profish/wyc/guidec2.htm>

<http://www.signate.com/signlaw/signlaw.html>

<http://www.logis-net.co.kr>

[http://www.tradecard.com/apply/gettingstarted.h  
tml](http://www.tradecard.com/apply/gettingstarted.html)



## The Legal Problems and Policy Suggestions for Vitalizing Cyber Trade Transactions

Shin-Kyuo, Lee\*

###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some legal problems of cyber trade transactions and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to vitalize cyber trade by internet accomplishes electronic business from all process integration of production, marketing and customer service. However, there are some legal problems for the electronic commerce to be used in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such as trade contract, transport documents and payment systems by internet.

First, international trade rules have to be legislated so that electronic documents has same legal function like traditional documents. Also electronic signature must has authenticity, integrity, non-repudiation, writing and confidentiality.

Second, traditionally international payment systems such as letters of credits, remittance, documentary collections and open account have been operated as an important and popular method of payment. In the modern world of electronic commerce, information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pay for the sale of goods and services over the internet. The payment methods such as Credit Card, Debit Card, Electronic Cash, Electronic Fund Transfers enable partly sellers, buyers and service providers to settle payment electronically through the internet. To settle the problems of payment systems, the security requirements for safe electronic payments such as authenticity, integrity, non-repudiation have to be guaranteed. Als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in transport documents has to be adopted and negotiability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has to be guaranteed. Electronic payment systems through SWIFT enable the sellers and the buyers to conduct and settle international business-to-business electronic commerce in case of solving the above problems and harmonizing the Bolero project.

---

\* Dept. of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Chungwoon University.